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7. 20 선고 2022가단112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병준

피 고 G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경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배교연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2. 2.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거제시 H면 일원에서 멍게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거제시는 2019. 12. 23. ‘2020년/2021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안내’를 공고하였는데, 대상 사업 중 ‘2020년 양식어장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어민 등에게 해상작업대와 위생 장비(이하 ‘해상작업대 등’이라고 한다)의 제작설치에 관해 총 사업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의뢰에 따라 해상작업대의 설계도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은 2020. 4. 29.부터 2020. 5. 22.까지 피고에게 해상작업대 등에 대한 설계용역비와 도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공사비 선금금 명목으로 각 5,5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0. 1.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을 하여 2020. 2.경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20. 4.경 거제시에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2020. 6. 12. 거제시가 원고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0. 6.경 거제시에 피고가 작성한 해상작업대에 대한 설계도를 첨부하여 해상작업대 등의 제작설치에 관한 계약 대행을 요청하였고, 거제시는 2020. 7. 21.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1순위로 결정된 업체가 업체 사정으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고, 2020. 8. 11. 다시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단독응찰을 이유로 유찰되었으며, 2020. 10. 27.경 또다시 입찰을 시행하여 주식회사

I와 J(이하 '주식회사 I 등'이라고 한다)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피고는 한 번도 응찰하지 않았다. 바. 원고들은 2020. 11.경 주식회사 I 등과 해상작업대 등을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20. 11. 23. 원고들을 상대로 낙찰자가 없을 경우 해상작업대 등의 제작설치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정을 믿고 해상작업대 등을 발주하여 이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가합2737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1. 9. 16. 낙찰자가 없을 경우 해상작업대 등의 제작설치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피고는 해상작업대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합계 6,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대표자 L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해상작업대 등의 제작설치에 관한 공개입찰 절차에 응찰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 체결이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해상작업대 등에 대한 설계용역비와 공사비 선금금 명목으로 받은 각 5,500,000원(합계 33,000,000원)에서 피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 각 1,000,000원(합계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각 4,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과 해상작업대 등의 제작설치에 관한 공개입찰절차에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M 주식회사에 해상작업대의 설치에 필요한 소재 구입 등의 비용으로 합계 29,668,000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들이 지급한 돈은 설계용역비와 금속자재

구입 및 가공비로 모두 지출하였으며, 오히려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해상작업대 등의 제작설치에 관한 공개입찰절차에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 해상작업대 등의 제작설치를 도급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결정된 낙찰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총 사업비의 약 80% 상당을 보조금으로 교부 받을 수 있으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총 사업비의 21% 상당의 보조금만을 교부 받을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보다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 한편 피고는 공개입찰절차 진행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응 피고도 원고들이 보조금 수령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개입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은 인식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20. 7. 21. 시행된 공개입찰절차에서는 2개의 업체가, 2020. 8. 11. 시행된 공개입찰절차에서는 1개의 업체가, 2020. 10. 27.경 시행된 공개입찰절차에서는 4개의 업체가 각 해상작업대 등의 제작자가 되고자 응찰하였고, 2020. 10. 27.자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낙찰자가 최종 결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낙찰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낮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2020. 1.경부터 2020. 10.경에 이르기까지 거제시에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고 각 계약 대행을 요청하면서 신청서, 계약대행요청서 등에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으로 총 사업비의 약 70~80% 상당의 돈을 기재함으로써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금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원고들이 거제시에 제출한 서류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도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사업의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개입찰절차를 통한 낙찰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을 뿐 사업의 자기부담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피고가 해상작업대의 설계도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제공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2020. 4. 29.부터 2020. 5. 22.까지 각 5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이 2020. 6.경 거제시에 계약 대행을 의뢰하면서 설계도를 제출한 사실, 원고 B이 2020. 7. 15.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계예산서 중 설계 설명서에 설계 수정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피고가 해상작업대 등의 제작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될 것임을 전제로 M 주식회사에 해상작업대의 제작에 필요한 스텐 자재의 절단 및 가공을 의뢰하는 발주서를 보냈다가 그 후 M 주식회사에 스텐사각 각관 등의 소재 구입 및 제작비용으로 29,668,000원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거나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22.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2.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